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26
----------	-----

2021. 1. 28.(목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월 13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월 21일

- 제38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한순기 기획관리실장)

가. 제안사유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68호)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1항)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주희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 개정은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목적으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
-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, 특구에서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2조제1항은 연구개발특구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특구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 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며,
- 안 제12조제2항은 특구에서 연구소기업*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임.

* 연구소기업, 첨단기술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

- 이는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, 연구개발특구 육성을 통한 지역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국가기술 혁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면 혜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【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】

○ 육성분야: 스마트IT 부품·시스템

중분류	세분류
스마트전자부품	이차전지, 반도체·디스플레이부품 기록매체·측정부품
스마트센서	전기전자 센서, 바이오센서
이동체통신시스템	알고리즘·V2X시스템, 사이버보안·측위기술 시스템, 네트워크 기반 상황인지판단 시스템

○ 공간구성: 충북대(기술핵심기관, 1.41km²), 오창과학산단 일부(배후공간, 0.79km²)

구 분		면적(km ²)	주요기능	비고
R&D지구	충북대 본원	0.95	중점기술 연구개발, 인력양성	
R&D 특성화지구	충북대 오창캠퍼스	0.46	육성분야 연구, 인력양성 실증,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	
사업화지구	오창과학 산업단지	0.79	창업·연구소기업 입주공간, 공동장비 활용 지원	
총 계		2.20		

○ 파급효과: **2024년까지 GRDP 1,412억원, 부가가치 897억원, 취업유발 2,522명**
 ▪ 특구 내 연구소기업 65개, 일자리창출 410명, 기술이전 97건 등

- 또한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 및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4조제1항, 제24조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하며,

【지방세특례제한법】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, 2014. 3. 24., 2020. 1. 15.>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【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】

제14조(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,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·자금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(이하 "외국투자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취득세 면제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규정한 것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르고, 조세감면 일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조례의 다른 감면 항목과 기한을 동일하게 정한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라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절차상으로도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조례안 예고를 거친 바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21년 1월 11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68호)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 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(안 제12조제1항)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6. 비용추계서 : 붙임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(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) ①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(이하 이 조에서 “특구”라 한다) 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·임대(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(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1.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·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
2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3.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
②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(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적용례) 제12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2조(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) ①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6조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(이하 이 조에서 “특구”라 한다) 지역을 개발·조성하여 분양·임대(같은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이 직접 사용(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할 목적으로 특구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	<p>1. <u>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특구를 개발·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u></p> <p>② 「<u>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 제4조에 따른 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. 다만,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·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(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.</u></p>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세특례제한법

제4조(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,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(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"지방세 감면"이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2. 27., 2014. 1. 1., 2014. 3. 24., 2020. 1. 15.>

1. 서민생활 지원,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,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2. 특정지역의 개발, 특정산업·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②~⑧ 생략

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

제14조(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,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.

1. 「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부담금
2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3. 「초지법」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4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
5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

6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·사용료

7.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

[전문개정 2012. 1. 26.]

제24조(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·자금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(이하 "외국투자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,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.

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·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2. 1. 26.]

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68호)에 따른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감면규정을 신설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

3. 관련조문
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특구 지역을 개발 조성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1항)
-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(안 제12조제2항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산출근거 : 부지 및 건축물 취득가액(과세표준) × 세율
(취득세, 지방교육세) 4.4% = 세액
 - 정부출연연구기관, 공공연구기관, 첨단 기술기업, 연구소기업, 외국인투자기업, 외국연구기관 입주(부지 및 건축물 취득)
- 산출과정 : 50억원(과표) × 4.4%(세율) = 2.2억원

- 토 지 : $2,000\text{m}^2 \times 200,000\text{원} = 4\text{억원}$
- 건축물 : $2,300\text{m}^2 \times 2,000,000\text{원} = 46\text{억원}$

- ▶ 대상지역 공시지가 : 평균 200천원/ m^2 정도(오창읍 송대리)
- ▶ 건축비 : 국토부 고시 2020년도 표준건축비 2,000천원/ m^2

나. 추계 결과 : 6억 6천만원

<3년간 지방세 감면 추정금액>

(단위: 억원)

	'21	'22	'23	총액
예상 수혜자	0	1	2	3
취득가액	0	50	100	150
과세표준	0	50	100	150
산출세액	0	2.2	4.4	6.6
지방세 감면 예상액	0	2.2	4.4	6.6

5. 작성자 : 세정담당관 세무7급 이재민